

2024. 3. 26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
| | |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법무담당관 | 정 선 미 | 02-2133-6680 |
| 법제심사팀장 | 송 학 용 | 02-2133-6690 |
| 담 당 자 | 신 영 미 | 02-2133-6689 |
| 법무행정 서비스 | http://legal.seoul.go.kr | |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: 9매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·개정 공포

조례 공포안 목록

서울특별시는 2024년 3월 19일 제5회 조례·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공포안을 심의·의결하고,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《 자치법규 공포 일정 》

- 2024. 3. 26.(화)
 - 조례 : 46건(제정 11, 개정 35)
- 2024. 3. 29.(금)
 - 조례 : 1건(개정 1)
- 2024. 4. 11.(목)
 - 규칙 : 5건(제정 1, 개정 4)
- 공포방법: 시보 게재

○ 2024. 3. 26. 공포(46건)

| 연번 | 조례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인사과 |
| -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| | | |
| 2 |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버스정책과 |
| -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함 | | | |
| 3 |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시의회 의정담당관 |
| -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심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,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| | | |
| 4 |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시의회 인사담당관 |
| - 의회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회원의 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중복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외출장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| | | |
| 5 |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도시계획과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태면적을 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함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되며 용적률을 최대 400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게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함 -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정비함 | | | |
| 6 |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| 제정 | 총무과 |
| -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조 및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| | | |
| 7 |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교통정책과 |

| 연번 | 조 례 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--|---|------|-----------|
| | -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부지면적 5만㎡ 이상에서 10만㎡ 이상으로 완화하고, 5만㎡ 이상일 경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함 | | |
| 8 |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교 통 운 영 과 |
| | - 최근 개정된 「교통안전법」상 “단지내도로”의 범위에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가 포함되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이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| | |
| 9 |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소상공인담당관 |
| | - 소상공인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 및 지원하고, 작업장의 디지털화,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·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함 | | |
| 10 | 서울특별시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에 관한 조례 | 제 정 | 평 가 담 당 관 |
| | -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| | |
| 11 | 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제 정 | 문 화 정 책 과 |
| | - 「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종로구 성균관, 강서구 양천향교 및 도봉구 도봉서원이 가진 유형·무형의 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 | | |
| 12 |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박 물 관 과 |
| |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시행 2023. 7. 18.)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 | | |
| 13 |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박 물 관 과 |
| |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시행 2023. 7. 18.)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 | | |
| 14 |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버 스 정 책 과 |
| | -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함 | | |

| 연번 | 조 례 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|---|------|-------------|
| 15 |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버 스 정 책 과 |
| -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마을버스 안에서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함 | | | |
| 16 |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학 생 과 |
| - 장학금 종류에 서울장학을 신설하여 시장장학, 서울장학 I, 서울장학 II로 규정하고 장학생의 선발방법 및 지급인원을 대학의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| | | |
| 17 |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| 제 정 | 시 민 협 력 과 |
| -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“바르게살기운동조직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| | | |
| 18 |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창 조 산 업 과 |
| -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‘영상제’에 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의 지원도 추가함으로써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| | | |
| 19 |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| 개 정 | 도 시 재 창 조 과 |
| - “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조례명을 변경하고, 서울 도심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| | | |
| 20 |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조 경 과 |
| - 야간 도로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등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함 | | | |
| 21 |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교 통 운 영 과 |
| -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조항을 신설함 | | | |

| 연번 | 조례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2 |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체육정책과 |
| - 시장으로 하여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여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유도하며,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 관람권사용료를 10%→8%로 하향하고, 명칭사용권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함 | | | |
| 23 |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버스정책과 |
| - 서울시 시내버스의 수소·전기버스 차량 도입 현황을 반영하여, 안전 점검 규정에 “CNG 용기” 를 “연료용기 또는 전기 배터리” 로 수정함 | | | |
| 24 |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버스정책과 |
| - 서울시내 마을버스를 CNG(압축천연가스) 버스에서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, 안전 점검 규정에 “CNG 용기” 를 “연료용기 또는 전기 배터리” 로 수정함 | | | |
| 25 |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평가담당관 |
| - 서울시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사업의 계획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, 미래전략과제 지원 사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신설함 | | | |
| 26 |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| 제정 | 시민협력과 |
| -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관하여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| | | |
| 27 |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소상공인담당관 |
| -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개정하고,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함 | | | |
| 28 | 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| 제정 | 자연생태과 공원여가사업과 |
|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계획 수립, 사업추진, 자연휴양림 안전관리, 산림치유지도사 활용 등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| | | |
| 29 |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정 | 조경과 |
| -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한 협약체결과 물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, 이식수목·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| | | |

| 연번 | 조 례 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30 |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뷰티패션산업과 |
| - 도시형소공인 업종의 신규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·대학 등 기관과 도시소공인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,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함 | | | |
| 31 |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| 제 정 | 시 의 회 인 사 담 당 관 |
| -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| | | |
| 32 |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도시재창조과 |
| -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 로 개정하고 세운광장의 정의 등을 정비함 | | | |
| 33 |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장애인복지정책과 |
| - 공공시설내 매점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| | | |
| 34 |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택 시 정 책 과 |
| - 「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범위를 조례에 명시함 | | | |
| 35 |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제 정 | 시 민 협 력 과 |
| 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| | | |
| 36 |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교 통 정 책 과 |
| - 도시철도, 노선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수단과 역사, 정류소 등 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,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| | | |

| 연번 | 조 례 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37 |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시 의 회 인 사 담 당 관 |
| -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| | | |
| 38 |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| 제 정 | 안심돌봄복지과 |
| -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만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, 위기가구의 발굴 및 위기극복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시와 자치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| | | |
| 39 |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| 제 정 | 뷰티패션산업과 |
| -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, 지원사업,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| | | |
| 40 |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복 지 정 책 과 |
| -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위탁의 규정을 정비하고,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수탁자의 수행능력 기준을 추가하며, 수탁기관 임원의 관리능력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임원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를 규정함 | | | |
| 41 |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| 제 정 | 문 화 정 책 과 |
| - 균형 잡힌 시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각종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함 | | | |
| 42 |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시 민 협 력 과 |
| -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,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| | | |
| 43 |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기 획 담 당 관 |
| -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안건을 동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청 제출 의안이 여러 조례에 중복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, 서식 교정 등을 통해 비용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며, 의원과 위원회에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함 | | | |

| 연번 | 조 례 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44 |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상권활성화담당관 |
|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시장정비사업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의 적용대상인 매장면적 합계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 | | | |
| 45 |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관 광 정 책 과 |
| -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이 특별관리지역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| | | |
| 46 |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도 서 관 정 책 과 |
| - 「독서문화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| | | |

○ 2024. 3. 29. 공포예정(1건)

| 연번 | 조 례 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47 |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| 개 정 | 택 시 정 책 과 |
| -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음주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,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함 | | | |

□ 규칙 공포안 목록

○ 2024. 4. 11. 공포예정(5건)

| 연번 | 규칙명 | 입법구분 | 소관부서 |
|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| 개정 | 조직담당관 |
| - 조례 개정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급이 하향됨에 따라 간사 직급을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조정함 | | | |
| 2 |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| 개정 |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|
| -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중에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와 「아동복지법」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, 생활안정 지원내용에 아동양육비, 자립촉진수당, 검정고시 등 학습비와 대중교통비, 문화활동비를 추가함 | | | |
| 3 |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| 개정 | 일자리정책과 |
| -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식사비 단가 인상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산출 기준을 정비함 | | | |
| 4 |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| 제정 | 정신건강과 |
| - 조례에서 위임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| | | |
| 5 |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| 개정 | 평화기반조성과 |
| -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, 기금명을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, 위원회 명칭을 “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| | | |